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16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및 과징금의 납부연기와 분할 납부
등에 관한 조항 일괄 정비 〉

■ 최형두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436호)

2024. 11.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건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2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관련	6
3.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관련	9
4. 「전과법」상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및 적합성 평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 명시 관련	15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최형두의원 등 18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9. 30.

다. 회부연월일 : 2024. 10. 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 법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여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행정기본법」상 입법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에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며,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제재처분의 기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와 분할 납부, 이행강제금 및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개별 법률들을 일괄 정비함으로써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1.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상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 조 제목을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하고 동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① (생략)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③ 제2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 <삭 제>

□ 검토 사항

- 동 법률안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
-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민주성과 적법성을 확보하고 적정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 「행정기본법」 제36조¹⁾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동조 제3항은 이의신청 여부에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1) 「행정기본법」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생략)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²⁾은 분담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30일 이내)에 비해 국민에게 유리한 규정에 해당하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제2항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심의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여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14일 이내)에 비해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에 해당하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제3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3항과 중복되는 내용임.

- 국민에게 유리한 현행 조항 외 나머지 조항을 삭제하여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려는 법률안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 또한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게 되는 현행 조항(「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제1항) 내용이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비해 국민에게 유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조 제목을 “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로 개정하는 것 또한 타당하다고 보임.

2)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5조의2(분담금에 대한 이의신청)①제25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분담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이므로,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를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2.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상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관련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함.

현행	개정안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 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제16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5조에 따라 해당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u>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검토 사항

- 법률안은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관련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에³⁾ 맞춰,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 법 제16조제1항은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의 사유는 새로 시행될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에 포함

3) 「행정기본법」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중복되는 바, 일반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 법률안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연장’을 ‘연기’로 하고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등 「행정기본법」과 자구를 통일한 것 또한 체계적 적합성 완비 측면에서 타당함.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이므로, 개별법상 과징금 분할납부에 관한 현행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를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단말기유통법」의 내용상 변동없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개정이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3. 「전기통신사업법」상 이행강제금과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관련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는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제5항 신설)
-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게 함.(안 제91조 개정)

현 행	개정안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생략) <u><신 설></u>	제13조(이행강제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u>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u>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 ③ (생략) <u>④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사실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u>	제51조의2(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u>

⑤ 방송통신위원회는 재제출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명령을 이행하기 전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조와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

⑤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 및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31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삭 제>

제9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3조 또는 제90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 따라 과징금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과징금을 분할 납부하게 할 수

<u>럽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u>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u> <u>2. 사업 여건이 악화되어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있는 경우</u> <u>3. 과징금을 일시 납부하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u> <u>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장, 분할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u> <u>②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분할 납부 및 담보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	--

□ 검토 사항

- 법률안은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기본법」의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를 적용하도록 명확히 하고,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관련 사항을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⁴⁾ 맞춰, 「전기통신사업법」(이하 “법”)에 따른 과징

4) 「행정기본법」

금의 납부기한 연장 및 분할납부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현행법 제13조⁵⁾는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51조의2는 사실조사 자료제출명령 위반에 대한 재제출명령 및 이행강제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행정기본법」 제31조⁶⁾에 따라 행정청은 이행강제금 부과 전 사전 통지의무, 명령 이행시 새로운 이행강제금 부과 즉시 중지, 명령 이행 전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의무를 부담하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개별법의 대통령령

제29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과징금은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청은 과징금을 부과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 전액을 한꺼번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재해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내면 자금 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5) 「전기통신사업법」 제13조(이행강제금)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0조제5항, 제12조제2항 또는 제18조제8항에 따른 명령(이하 이 조에서 "시정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후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하루당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은 그 소유한 주식 매입가액의 1천분의 3 이내로 하되, 주식 소유와 관련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1억원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대상 기간은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시정명령을 이행하는 날까지로 한다. 이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시정명령에서 정한 이행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③ 이행강제금의 가산금에 관하여는 제53조제5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
- ④ 이행강제금의 부과·납부·환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6) 「행정기본법」 제31조(이행강제금의 부과) ②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1. 의무 불이행의 동기, 목적 및 결과
 2. 의무 불이행의 정도 및 상습성
 3. 그 밖에 행정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
- ③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미리 의무자에게 적절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뜻을 문서로 계고(戒告)하여야 한다.
- ④ 행정청은 의무자가 제3항에 따른 계고에서 정한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부과 금액·사유·시기를 문서로 명확하게 적어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⑤ 행정청은 의무자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반복하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 ⑥ 행정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제강제징수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으로 위임하여 규율하고 있음

- 동 법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징수 등과 관련된 절차는 「행정기본법」 제31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절차와 중복규율되어 있는바,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관련 「행정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간의 적용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일관된 법 적용으로 국민과 공무원의 행정법 이해도를 향상시키고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해 보임.
- 또한, 현행 법 제91조제1항은 사업자가 내야 할 과징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내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유를 각 호에 규정하고 있음.
- 각 호의 사유는 이미 시행중인 「행정기본법」 제29조 단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사유에 포함 또는 중복되는 바, 일반법에 규정된 내용을 따르도록 한 법률안 취지는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연장’을 ‘연기’로 하고 ‘분할납부’를 ‘분할 납부’로 하는 등 「행정기본법」과 자구를 통일한 것 또한 체계적 적합성 완비 측면에서 타당함.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이므로, 개별법상 과징금 납부에 관한 현행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 개정안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행정기본법」의 일반법·기본법적 지위를 고려하여 개별법에 산재한 제도를 「행정기본법」 취지에 부합하도록 하는 정비 필요성에 공감하며, 「전기통신사업법」의 내용상 변동없이 과징금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과 이행강제금 관련 절차를 명확히 하는 개정으므로 수용한다”는 입장임.

4. 「전파법」상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과 적합성 평가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상한 명시

- 「전파법」 제7조의2제1항을 삭제하고 동조 제2항을 제1항으로
하며,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함.(안 제7조의2 제2항 신설)
- 적합성평가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제재처분(생산·수입·판
매·사용중지)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함(제58조의
4제1항)

현행	개정안
제7조의2(이의신청 등) ① 시설자 등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 상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손실보 상금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 터 30일 이내에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7조의2(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특례) <삭 제>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 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의 증감 여부 를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 를 이의신청한 시설자등에게 알 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① ----- 제7조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금 액 결정에 대한 ----- ----- ----- ----- -----.

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 설>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자재에 대한 적합성평가를 취소하거나 개선, 시정, 수거, 철거, 파기 또는 <u>생 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 용중지</u>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 4. (생 략) ②·③ (생 략)	----- -----.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u>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 기본법」 제36조에 따른다.</u> 제58조의4(적합성평가의 취소 등) ① ----- ----- ----- ----- ----- ----- <u>6개월 이 내의 생산중지·수입중지·판 매중지·사용중지</u> ----- -----. 1. ~ 4.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

□ 검토 사항

- 법률안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을 일반적으
로 규율하고 있는 「행정기본법」 제정에 맞춰, 「전파법」 제7조
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파수회수 또는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

상 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내용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을 개정하려는 취지임.

- 「행정기본법」 제36조⁷⁾제1항은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로 하여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동조 제2항은 행정청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
- 이에 비추어 볼 때, 현행 「전파법」 제7조의2제1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제1항(30일 이내 이의신청)과 중복되는 내용에 해당하는 바, 이를 삭제하고 이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르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들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이해하기 쉽게 한다는 취지에서 타당한 것으로 보임.
- 한편, 「전파법」 제7조의2제2항은 손실보상 금액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손실보상금 증감 여부를

7) 「행정기본법」

- 제36조(처분에 대한 이의신청)① 행정청의 처분(「행정심판법」 제3조에 따라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이내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도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생략)

결정하고 알리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행정기본법」 제36조제2항(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통지)에 비해 국민에게 불리한 내용에 해당하나, 주파수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금 산정 과정의 특수성, 전문적 평가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기한을 유지하며 이런 내용을 반영하여 조 제목 중 ‘이의신청 등’을 ‘이의신청 특례’로 수정하는 방향에 공감할 수 있음.

○ 또한 개정안 제58조의4는 적합성 평가를 받은 이후 평가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 등 적합성평가 위반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생산중지, 수입중지, 판매중지, 사용중지와 같은 제재처분의 상한을 6개월 이내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현행 「행정기본법」 제22조⁸⁾에서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개정안은 제재처분에 대한 법률의 명확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으며, 6개월의 상한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현재 시행령 별표상의 제재처분 기준의 최대치가 4개월⁹⁾임을 감안할 때, 현재의 법령체계를 훼손하지 않는 한

8) 제22조(제재처분의 기준) ① 제재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에는 제재처분의 주체, 사유, 유형 및 상한을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재처분의 유형 및 상한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특수성 및 유사한 위반행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재량이 있는 제재처분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및 방법

2. 위반행위의 결과

3. 위반행위의 횟수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9) 전파법 시행령 [별표23] 적합성평가를 받은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도내에서 적절한 수치를 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개정안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행정기본법」은 모든 행정 분야에 적용되는 일반법·기본법이므로,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 규정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정비하는 개정 취지에 공감한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25

- 법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 서류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 : 3차 위반시 생산·수입·판매 또는 사용중지(4개월)